

제 1783 호
1993. 11. 13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
편집인 : 공보관 김우석
전화 : 731-6111~3
인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화 : 273-8111~3

시보

차 례

● 고 사

제 1993-358 호	사료성분등록	2
제 1993-361 호	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	3

공 망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내일”

고 시

●서울특별시고시제1993-358호

사료성분등록

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을 같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
고시합니다.

1993. 11. 13

서울특별시장

1. 등록업체명: (주)한영당밀

· 소재지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-4

· 대표자: 장낙필

· 등록사료(2종): 인도네시아 “퍼티 인트라 왜골라 자카르타” 제품을 수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사용범위	사료의 성분량			비고
				전화당			
서울-399	수입 단미사료	당밀 (CANE MOLASSES)	배합사료 원료용	47.0% 이상			BRIX 76% 이상

2. 등록업체명: 유동기업(주)

· 소재지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46

· 대표자: 장기주

· 등록사료(1종): 인도네시아 PT. SAJANG에서 수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도	사료의 성분량			비고
				조지방	산가	이물질	
서울-400	수입 단미사료	식물성유지 3 (CRUDE PALM STEARIN-PT SAJANG)	배합사료 원료용	93.0% 이상	30.0% 이하	2.0% 이하	열량 7,000 (KCAL/kg) 이상

3. 등록업체명: 정한개발(주)

· 소재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4가 156-1

· 대표자: 박동현

· 등록사료(4종): 캐나다, 미국에서 수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도	사료의 성분량				비고
				조단백질	조섬유	조회분	수분	
서울-401	수입 단미사료	알파파 1 (CANADIAN ALFALFA HAY-CUBE)	초식가축 급여용	17.0% 이상	22.0% 이상	12.0% 이하	12.0% 이하	

등록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도	사료의 성분량				비고
				조단백질	조섬유	조회분	수분	
서울-402	수입	알파파 2	초식가축	19.0%	22.0%	12.0%	10.0%	
	단미사료	(ALFALFA HAY CUBE)	급여용	이상	이상	이하	이하	
서울-403	"	알파파 3	"	16.0%	22.0%	12.0%	10.0%	
		(ALFALFA HAY CUBE)		이상	이상	이하	이하	
서울-404	"	알파파 4	"	19.0%	22.0%	12.0%	12.0%	
		(ALFALFA BALED HAY)		이상	이상	이하	이하	

4. 등록업체명: 럭키금성상사(주)
 · 소재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

· 대표자: 전진환
 · 등록사료(1종): 러시아에서 수입

등록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도	사료의 성분량				비고
				조단백질	수분	조섬유	조회분	
서울-405	수입	불활성효모	배합사료	55.0%	13.0%	10.0%	10.0%	펩신소화율 75% 이상
	단미사료	(INACTIVATED YEAST "PAPRINE")	원료용	이상	이하	이하	이하	

●서울특별시고시제1993-361호

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
 관한고시
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
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
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3. 11. 13

서울특별시장

1. 신청절차

주유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
 서류(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
 식)를 구비하여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 접수하여야 한다.

2. 허가기준

가. 자격기준

- (1) 석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
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
 다.
- (2)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
 체결한 자이어야 한다.

나. 지역제한

- (1)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
 의 규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과
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이
 상의 공동주택(동일 건축물이 아닌
 경우에는 대지를 연결한 2개 이상의
 공동주택을 말한다) 외벽으로부터 직
 선거리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
 다.

- (2) 주유소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주유소 설치위치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
- (4) 주유소 설치면적은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(5) 건축법, 도시계획법, 소방법,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

다. 시설기준

- (1) 저장시설: 40kℓ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(2) 주유기 : 4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: 1개소(남·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적 10㎡ 이상)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라. 취급유종: 휘발유, 등유, 경유에 한한다.

3. 제출서류

가.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

나. 토지등기부 등본

다. 공증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(타인 토지의 경우에 한한다)

라.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거리를 측정한 도면

4. 허가신청 처리

가.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관련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199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중전고시 폐지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

중전의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135호는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,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 처리중에 있는 주유소의 허가는 중전 고시에 의한다.